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1771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4. 1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1,32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20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고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6. 접수 제20380호로 마치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22. 접수

제307521호로 이전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제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의 말소를 구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성준규

별지